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8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조경태·김상훈·인요한

성일종 · 조정훈 · 이헌승

박준태 • 곽규택 • 이상휘

고동진 · 송석준 · 윤재옥

배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²)은 일본 도쿄(2,188km²), 영국 런던(1,285km²)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 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 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 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라 고 함.

주요내용

- 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법률 제 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김포 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 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 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의 김포시를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에 김포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구의 명칭	관할구역
김포구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김포시 일원

③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김포시 일원을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김포구의 특례 등은 지방 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김포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례 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이하 "김포구"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규칙 중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김포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김포시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처리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

구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사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 구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본다.

- 제5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상 김포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30년 12월 31 일까지 김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경 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김포시장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 할 수 있다.
- 제6조(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김포시에 설치된 읍 •면·동은 김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 지역은 읍·면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김포시장은 이 법에 따른 김포구청장으로 본다.
- 제7조(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김포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

- 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를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를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김포구 또는 김포구청장에 관한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김포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서울특별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김포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김포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